

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(울산)

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「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19일
울산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,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

□ 지원규모 및 조건

- (지원규모) 7개사 내외*
*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
- (지원조건) 소요비용의 50% 지원(최대 16백만원)

지원구분	정부지원금 한도	사업기간	접수형태
AS지원	최대 16백만원 (총 사업비의 50% 이내)	4개월 (연장 2개월)	수시모집 (1.19~예산소진시)

※ 사업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
[최대 사업기간 6개월(4+2개월)을 초과한 사업수행은 불가]

2.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지원유형	지원내용
AS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(부품 등) 및 SW(솔루션 등)의 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▪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 개선, 생산 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SW 업그레이드)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, 모듈 추가, 기능추가 지원 * (HW 업그레이드)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·결함수리, 기능 개조 지원 (단,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) ▪ 역량강화 교육,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

※ 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·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, ②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, ③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 지원불가

<지원 부적정 항목(예시)>

- 1)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
(예시 :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·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,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)
- 2) 임대 사용료, 기간이 정해진 라이선스형 소프트웨어 비용
(예시 :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,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)
- 3)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
(예시 :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(주기적 활동)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)

□ 지원범위
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, SW 및 솔루션 (MES, ERP, PLM 등)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- 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(MES, ERP, PLM등)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

- 스마트공장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률 제고 분야는 아래 지원내용 중 선택하여 수행

지원항목	지원내용
프로그램 수정·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◆ 수정 프로그램 개발 ◆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◆ 화면 UI 수정
시스템 유지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공정 개선, 생산품목·원자재 변경,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대응 지원 등 ◆ 공정, 생산장비, 원자재 등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의 원활한 수집(센서,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)과 분석·활용 지원
데이터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백업 및 문제 발생 시 복구 지원 ◆ 입력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수정 작업 지원 ◆ 대량 데이터 일괄 입력(품목정보, 공정정보, 단가, 입출고 정보 등) ◆ DB 최적화
사용자 운영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시스템 운영 애로 해결 지원 ◆ 사용자 교육 지원 ◆ 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지원 ◆ 단말기, 스캐너, 바코드 등 HW 사용 에러 해결 및 수리 지원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항(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)

3. 신청자격 및 방법

□ 신청자격

- ①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*, 또는 ②기업 자체역량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「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**」를 발급받은 중소기업*, ③'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(기초)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*

* 공급기업으로부터 유·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기업

**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'의 수준확인 기관에서 발급
[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신청 가능]

□ 신청기간

- (AS지원) 2024년 1월 19일 ~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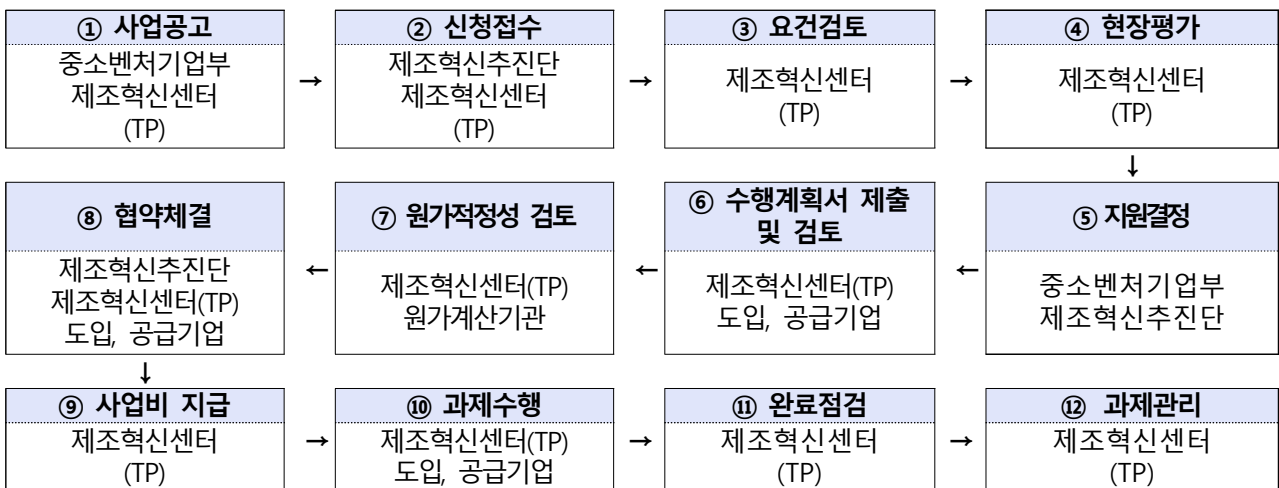
□ 신청방법
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- (AS지원)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AS지원사업(AS지원)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

구분	온라인 제출 서류
1	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 *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(지역 제조혁신센터(TP)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)
2	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
3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
5	도입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('20년도 ~ '22년도)
6	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수준확인서, 상세 구축 내역(SW, HW 등)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: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

* 제출서류 양식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지원절차



- ※ ④현장평가, ⑪완료점검 : 외부전문가 1인(필요시 제조혁신센터(TP) 참여 가능)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
- ※ ⑦원가적정성 검토 :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

4.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

※ 평가, 선정, 협약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수요 등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될 수 있음

□ AS지원

- (현장평가) 대상 적합성, 지원 적정성,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, 지원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

* 가점 5점(최대) 별도 반영(지역별 제조혁신센터(TP)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)

【 AS지원(현장평가) 】

구분	평가 항목	평가 등급				
		우수	양호	보통	다소 미흡	미흡
AS 대상 적합성	○(사업참여)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	(○/x)				
	○(자체구축)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					
	○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, 낮은 금액으로 협약 변경 진행 인지 및 동의 여부	(○/x)				
	○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					
	○ 공급기업으로부터 유·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(기간 만료시 ○체크)	(○/x)				
AS 지원 적정성 (40)	15					
관리 및 활용 (45)	○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	15	12	9	6	3
	○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	10	8	6	4	2
	○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	15	12	9	6	3
지원성과 (15)	○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·운영 보유 역량	15	12	9	6	3
	○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	15	12	9	6	3
가점 (5)	○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·활용 노력	15	12	9	6	3
	○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	15	12	9	6	3
평가 점수						
평가 결과 (부적합 사항이 없으며,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)	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	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	

□ 가점항목

연번	세부내용	가점
1	○ 스마트공장 교육수료(임원대상, 2회 이상)	2점
2	○ 청년 고용 우수기업(최근3년)	2점
3	○ 지역 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	2점
4	○ 지역 스타기업, 선도기업	2점

*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,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

** 접수 시, 증빙자료(수료증, 인증서 등)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점사항 불인정

5.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 대상
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(사업 참여제한 등)
- 타 공급기업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AS가 가능한 도입기업

□ 유의사항

- 전체 지원결정 전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(원가계산) 실시
-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에 유의
(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AS지원 가능)
- ‘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’ 관련 타 사업(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등)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에 유의
- 교부 보조금의 관리·집행은 관련지침 등을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, 공급기업은 AS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에 유의
-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수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(기업)에 귀속됨에 유의

6. 지역별 공고, 접수 및 문의처(제조혁신센터, TP)

지역	기관명	연락처
서울	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2-944-6032/6036
부산	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1-974-9154
대구	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3-602-1864/1860
경북	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3-819-3056~8
포항	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4-223-2242/2244
광주	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2-602-0200
전남	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1-729-2581~4
제주	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4-720-3039
경기	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1-500-3100
경기북부	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1-539-5145,5147
인천	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2-260-0621~4
대전	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2-930-4351~2
충남	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1-589-0705
세종	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4-850-2151/2154
울산	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52-219-8646/8910
강원	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33-248-5682
충북	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43-270-2813
전북	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	063-832-6052,3
경남	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	1811-8297